

안전·보건 관리규정

[DAERO안전2025. - REV.5]

대로건설(주)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 3 장 안전 · 보건교육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 7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 8 장 보 칙

[제 1 장 총 칙]

1.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 동법 시행령(이하 “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및 노동부 고시(이하 “고시”)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대로건설(주)” 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은 물론 회사의 경영이념인 인간존중 정신을 실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안전·보건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것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 가. “산업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나. “안전관리” 라 함은 불안정한 인간의 행동 및 물리적, 기계설비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도록 인원 및 시설을 관리하고 통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다. “보건관리” 라 함은 직원의 건강 유지 증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라. “사업장” 이라 함은 회사의 주된 건물과 회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마. “현장” 이라 함은 회사가 시행하는 각종공사 및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라 함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 사. “현장소장” 라 함은 현장을 총괄·관리하는 자로 한다.
- 아. “관리감독자” 라 함은 현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자. “포장팀 관리자” 라 함은 안전관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 차. “장비팀 관리자” 라 함은 보건관리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4. 업무주관부서

- 가. 안전관리의 주관부서는 안전보건팀으로 하며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사 주관부서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나. 주관부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종하고 전사적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5. 안전보건업무의 우선

- 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한다.
- 나.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6. 사고예방 책임과 의무

- 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공동 책임이 있다.
- 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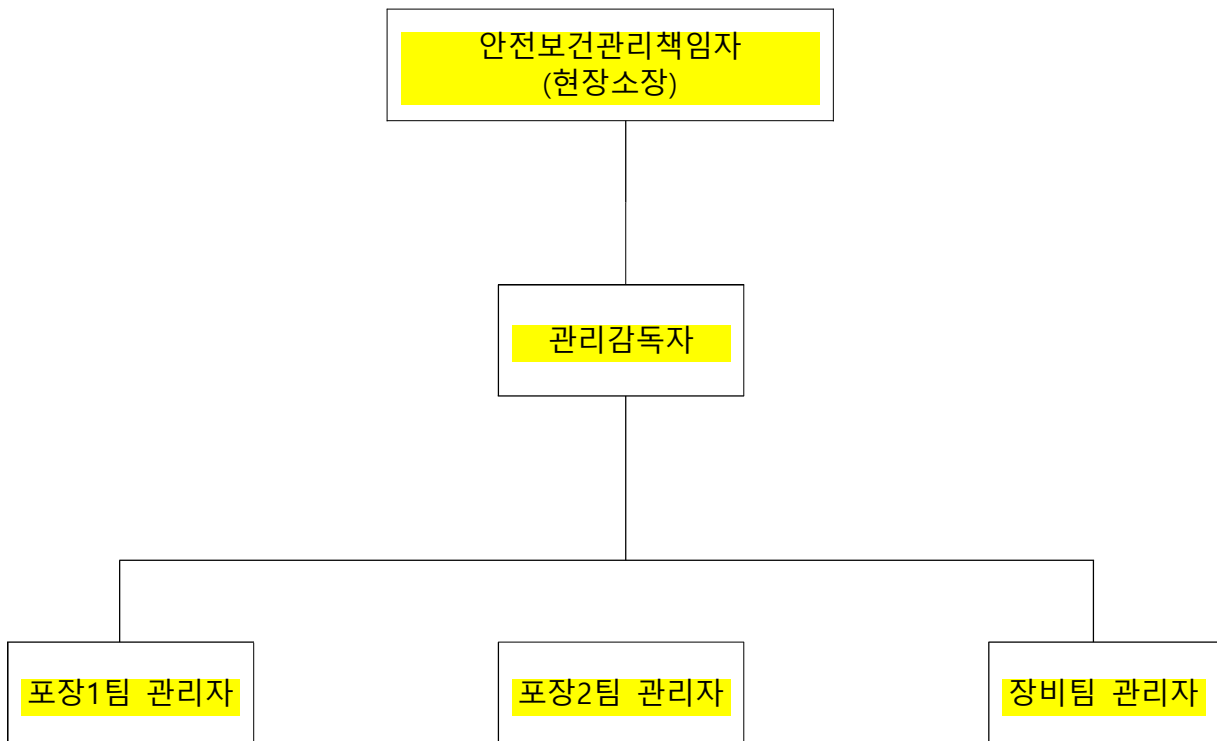
7.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 가. 20억 이상의 협력업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증명서류를 비치한다.
- 나. 각 협력업체는 원청사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다. 원청사에서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통제, 조정하고 안전관리유지업무를 관장한다.
- 라.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은 별도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안전 · 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1. 안전 · 보건관리조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직하여 업무를 분장 운영한다.



2.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

-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3)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4)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5) 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
- 6) 안전보호구 등 적격품 여부 확인
- 7)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휘 감독
- 8) 현장순회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나. 관리감독자

- 1) 포장팀장 및 장비팀장 일일보고내용 검토 및 지도
- 2) 근로자 안전보호구 점검 및 착용 교육지도
- 3)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4)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

다. 포장팀 관리자

- 1) 근로자 투입전 건강관리 사전체크
- 2) 근로자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시행
- 3) 포장작업 중 위험요인 파악 및 보고

라. 장비팀 관리자

- 1) 건설기계 안전 점검 이상 유무 확인 및 보고
- 2) 건설기계 안전사고방지장치 지급 및 장착 시행
- 3) 장비작업 중 위험요인 파악 및 보고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운영 대상사업장, 구성위원, 위원장, 회의개최 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한다.

- 1)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3)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한다.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 시)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가. 위촉대상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다. 업무범위

-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 검사 입회
-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입회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9) 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작업지휘자

가. 다음 작업의 경우 종사근로자 중 작업경험이 많은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지게차, 셔블로우더,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
- 2) 100Kg 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 3) 불도저, 모우터그레이더, 로우더(무한궤도, 타이어), 스크레이퍼, 스크레이퍼, 도우저, 파워셔블, 드레글라인, 그램셀, 버킷굴삭기, 트랜취, 향타기, 어스드릴, 어스오우거, 리버어스, 셔어클레이션드릴, 천공기(쇼빙머신 있는 것에 한함), 페이퍼드레인머신, 로울러 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정착 및 해체작업
- 4) 향타기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5) 크레인, 데릭 또는 건설용 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6) 폭발성, 발화성, 산화성,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7) 화학설비의 개조 수리작업

8) 산소결핍 위험작업장

9) 고기압하의 작업

나. 작업지휘자는 상기 “가”의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종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 · 보건교육

1. 신규채용자교육

- 가. 교육대상자 : 신규채용자
- 나. 교육시기 : 담당업무 종사 전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4시간)
- 다. 교육방법 : 법31조의2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된 기관에서 실시
- 라. 교육내용(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1)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2)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3)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4)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2.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가. 교육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 나.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 전
- 다. 교육방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라. 교육내용
 - 1)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보건교육

- 가. 교육대상자 : 영 별표2의 각호에 규정된 작업종사자
- 나. 교육시간 : 건설업은 2시간 이상
- 다. 교육방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라. 교육내용 :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8의2) 중 특별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경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 (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숲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동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작업
38. 석면해체·제거작업

4. 정기안전교육

가. 교육대상자 : 모든 근로자

나. 교육시간 : 매월 2시간 이상

다. 교육방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교재를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서 작성한 교재 및 기타 안전교육 자료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라. 교육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2) 작업공정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3) 작업환경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4) 표준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5)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6) 안전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7) 안전사고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8) 무재해추진실무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10)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 11) 안전표시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관리감독자 교육

가. 교육대상자 : 부서장 작업반장 등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나. 교육시간 : 반기 8시간 이상(정기교육과 별도시행)

다. 교육방법 : 사업장 실정에 맞는 자체 교재를 사용하되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

라. 교육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2) 안전작업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3) 근로자 안전교육방법 및 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 4)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에 관한 사항

- 5) 산업재해발생 및 이상 발견시 조치에 관한 사항
- 6) 보호구 착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사항
- 7) 제품, 원재료의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8) 위험기계·기구 설비 및 유해물질관리와 직업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9)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10) 무재해 추진기법의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
- 11) 현장근무자 안전보건교육 고취에 관한 사항
- 12)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강 사(근로자에 대한 교육)

- 1) 노동부장관이 인가한 지정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등)
- 2) 건설안전기술사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4) 관리감독자
- 5)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포함)
- 6)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포함)
- 7) 산업보건의
- 8)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9) 산업안전지도사
- 10) 산업보건지도사
- 11)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7. 교육계획 수립 및 기록

- 가. 안전관리자는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나.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한다.
- 다. 안전관리자는 기록한 일지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작업장 안전관리

1. 안전관리계획

- 가. 안전관리자는 현장 개설 초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동의를 얻어 노사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다. 안전관리자는 매년 1월 중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소장에게 보고 시행하여야 한다.
- 라. 안전관리계획은 전 부서 및 전 근로자에게 통고하고 일정기간 게시한다.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 가.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는 영 별표7에 해당한다.
- 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는 성능검사 검정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 다. 방호장치에 대한 관리는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라. 안전관리자의 허가없이 방호장치의 제거, 개조 등 행위를 금지한다.
- 마.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바.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사.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2.1.26>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제27조제1항 관련)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

3.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

가. 안전검사

유해위험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 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유해위험 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안전검사 대상

- 1) 프레스
- 2) 전단기
-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 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 4) 리프트
- 5) 압력용기
- 6) 곤돌라
-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 12) 사출성형기

다. 자율검사프로그램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등을 충족하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안전수칙

가. 제정대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전작업장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일반 안전수칙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위험작업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 가. 작업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 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나. 기타, 고압가스저장소 및 고압가스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한 부서 및 장소에 대하여도 인화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6. 작업중지기준

- 가. 중대재해발생시
- 나.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음이 확인될 때

7. 안전표지

- 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시설물, 장비, 작업장 및 기타 위험장소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반드시 안전표지(금지, 경고, 안내, 지시표지) 및 안전수칙 등을 부착, 게시하여야 한다.
- 나. 현장 근로자는 항상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사항에 유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 다. 안전표지는 항상 청결하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설치, 이동 및 철거는 안전관리자의 승인에 의한다.

8. 안전기준 및 작업지침

- 가. 사업장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 안전기준 등 각종 안전기준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정하여 시행한다.
- 나.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다. 근로자는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 3) 기계, 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 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가. 대상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및 건설업의 경우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나. 도급인(하수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다.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노동부 고시에 의한다.

10. 안전점검 및 순찰

- 가. 안전순찰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일 1회이상,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 철저
- 다. 신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자체 안전전문팀을 구성하여 사전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실시
- 라. 점검방법은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되 점검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상태
 -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 4)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시판 설치 상태
 -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상태
 -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 마. 안전점검결과는 안전보건관계자를 경유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있을 시에는 시정지시서를 해당 협력업체 또는 부서장에게 발부하고 해당 협력업체 또는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조치하고 즉시 안전담당부서(안전관리자)에 통보한다.

제 5 장 작업장 보건관리

1. 근로자 건강진단

- 가.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기타의 근로자에게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며 실시 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
- 나. 소음, 분진의 작업이나 강력한 진동발생 등 특정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다. 건강진단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건강진단결과표를 따로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유해물의 취급절차

- 가. 취급부서 및 취급자를 정하여 취급토록 한다.
- 나. 부서업무와 업무체계를 정하고 작업지휘자의 지휘를 받는다.

3. 보호구의 지급

- 가. 작업 공정별 해당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한다.
- 나. 보호구의 종류
 -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2) 안전화
 - 3) 안전장갑
 - 4) 방진마스크
 - 5) 방독마스크
 - 6) 송기마스크
 - 7) 전동식 호흡보호구
 - 8) 보호복
 - 9) 안전대
 - 10)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 11) 용접용 보안면
 -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4. 질병자 등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가. 규칙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서 정한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나.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다. 고혈압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운영한다.

구 분	최고혈압 기준	취업기준	비 고
고혈압	140 이하	정상근무	- 혈압측정 - 신규자 교육 시 2회 측정 중 낮은 수치 적용
	170 미만	소견서 제출후 취업여부 결정	
	170 이상	취업불가	

라. 고령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운영한다.

구 분	취업기준	비 고
일반 근로자	만 65세 이하	단, 근로자의 심신 상태가 부적당한 상태로 근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반장, 안전관리자, 시공자가 협의 후 근로투입을 금지할 수 있음
작업반장 및 장비운전원	만 65세 이하	

마. 경력사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준은 아래의 표에 따라 운영한다.

구 분	취업기준	비 고
일반 근로자	동종경력 6개월 이상	단, 해체/고소작업 등 고위험작업의 투입은 금지함.

5. 보건표지·보건수칙 및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표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또는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나. 보건 수칙

- 1) 작업장의 조명, 정리정돈, 청소, 분진, 온도, 습도, 환기, 유해물질 취급기준 등의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근로자는 보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근로자의 의무 및 작업 거부권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거, 근로자들에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조치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제25조에 의거)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불안전 하여 근로자에게 유해·위험이 초래될 시에는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7. 서류의 보존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1.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 가.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현장 지정병원에 연락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이 포함된 내용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재해발생시의 긴급조치

- 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근로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 또는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응급실 또는 안전관리실에 재해 발생시 필요한 응급용구(구급함, 환자 이동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 다. 재해재발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4. 사고조사 및 보고

- 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관계자는 응급조치 후 즉시 안전담당부서에 통보한다.
- 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재해통보 접수 후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또한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토록 한다.
- 다. 재해발생현장은 현장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 라. 안전담당부서는 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사고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바. 사고조사는 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5. 분기별 또는 연간 재해분석 및 대책

- 가.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분기 중에 발생한 재해현황을 총괄·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최고책임자에게 보고, 시행하여야 한다.
- 나. 안전보건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 중에 전년도 재해를 총괄·분석하고 재해다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 다. 연간 재해분석 결과는 각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근로자 및 각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6. 기록 및 관리

- 가. 안전보건담당부서는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유지 및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나.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 7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사항

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매월 1회

나.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절차:

- 1) 현장소장은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위험성평가를 매월 1회 현장에서 실시하며, 위험성 등급이 높음인 경우 위험성을 보통 및 낮음으로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소장은 검토 회의시 위험성 평가 내용 중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수정·보완토록 조치한다.
- 2) 관리감독자는 포장팀 및 장비팀 안전보건관리자가 실시한 위험성 평가를 검토·집계하여 위험성 등급수준 낮음, 보통 등급에 한하여 현장소장의 결재를 득하며 높음 등급은 중점관리위험요인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한다.
- 3) 작업요인분석
공정별 세부작업단위를 선정하고, 각 작업단위별로 객관적인 작업요인을 분석한다.
- 작업요인분석 요건
 - (1) 작업여건 : 고소작업, 밀폐된 공간, 어두운 환경 등
 - (2) 작업순서/방법 : 공법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작업순서 파악
 - (3) 투입장비 :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수량, 용량 파악
 - (4) 작업인원 : 직종, 적정인원수, 숙련도, 건강상태 등
 - (5) 타공정연계성 : 같은 공간에서의 연관 작업 등
- 4) 위험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세부작업단위에 대한 잠재적/실제적 위험요인 및 재해 형태를 파악한다.
 - (1) 잠재적/실제적 위험요인 :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요소
 - (2) 재해형태 : 추락, 전도, 충돌, 협착, 감전, 낙하, 붕괴, 절단, 중독, 화재, 무리한 동작 등 발생하는 피해 필요한 경우,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한다.
- 5) 위험성 평가 등급기준
파악된 잠재적/실제적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강도를 평가하여 위험성 수준 평가기준(위험등급)을 결정한다.

- 발생 가능성 평가(빈도)

- (1) 발생 가능성 평가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정의 유경험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 가능성 등급을 설정한다.
- (2) 발생 가능성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수, 노출시간, 전기/물/에너지 등의 차단, 기계장치 또는 안전장치의 고장, 노출요인, 보호장구의 착용, 작업자 실수, 위험성의 인식부족, 작업환경조건, 비정상/비상사태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3) 발생 가능성 평가기준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 발생 강도 평가

- (1) 발생 강도 평가는 피해의 영향을 받을 인체부위, 피해의 성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2) 작업환경 측정결과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 할 경우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안전보건 관련기관/연구소등에서 제시한 지표를 참고로 한다.
- (3) 발생 강도 평가기준

구분	강도	기준
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 위험성등급 수준(Risk Level)평가

- (1) 발생 가능성 평가와 발생 강도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한다.
- (2) 위험성등급 수준평가 기준(Risk Level in Risk Matrix)

빈도 \ 강도	대	중	소
상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	보통 (3)	낮음 (2)	낮음 (1)

6) 위험성등급 수준에 따른 관리 기준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6~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 위험성 등급수준이 높음 등급일 경우는 위험성이 감소 될 때까지 해당 작업을 중지한다.

2. 위험성 감소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가. 예방대책 수립

- 1) 위험성 등급 수준 보통, 높음 등급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감소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 2) 위험성 등급 수준 낮음 등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 없으며, 현 작업상태가 유지되도록 확인한다.

나. 교육계획

위험성 등급 수준 높음 등급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수행할 담당지정다. 예방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위험성 평가에 등록된 위험요인별 예방대책 및 교육계획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확인할 점검자 및 점검방법 등을 선정한다.

제 8 장 보 칙

1. 무재해운동

- 가. 무재해운동의 시행요령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요령에 의한다.
- 나. 무재해 달성시간 또는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 기록판 및 무재해기를 사업장 입구나 각부서의 입구에 부착한다.
- 다. 무재해운동 달성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한다.

2. 안전·보건제안 제도

- 가. 전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 나. 각 협력업체마다 필요한 곳에 제안함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수시로 필요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상·벌

안전·보건부서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협력업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 현장에서 퇴출조치 한다.

- 가.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협력업체 및 개인
 - 3) 안전업무 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 4) 안전에 관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모범이 되는 근로자
- 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 2) 각종 재해사고의 은폐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 3) 음주상태로 작업을 하는 자
 - 4)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초래시킨 자
 - 5)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시킨 자

다. 포상 또는 징계 요구시 평가기준

- 1) 재해율, 도수율, 강도율 및 손실금액
- 2) 안전진단 결과표 및 시정실적
- 3) 무재해목표 달성실적
- 4) 안전수칙 실천상태, 교육 및 안전활동
- 5) 근로자의 참여의식 및 이행상태
- 6)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기록보존

현장공사를 마감하고 철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식을 갖추어 안전관리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 가. 재해사고보고서 및 처리에 관한 서류(요양신청서, 휴업급여 등)
- 나. 관할 감독기관에 보고된 제반서류(노동부, 경찰서 등)
- 다. 안전관련일지 등
- 라. 기타 합의, 소송 및 미결업무에 관한 서류

7. 작업시작시간 등

작업 시작 시간은 07시, 작업 종료 시간은 17시로 정하며, 계절적 특성이나 작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공사 착공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당사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3.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변경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 시행한다.